

#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연구

장상록\*, 윤우영\*\*

## 〈 초 록 〉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총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각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총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법학박사(경영학박사)

\*\*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경영학박사)

〈초록(계속)〉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용어 : 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연금소득 과세원칙, 연금충당부채

## 제1장 서론

현행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연금공단은 비과세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연금제도는 국가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각 연금공단과 연금기금은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로는 대부분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법인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금운용이익에 대하여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세 비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에 대하여는 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연금제도 고유의 업무를 위해 각종 물적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연금공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서는 연금공단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관리단<sup>1</sup>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일부 감면해 주었다.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과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 사학연금공단의 복지사업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여 주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사업,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중식사업, 사학연금공단의 자산운용사업,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자산운용사업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었다. 다만, 일몰기한(2014.12.31)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2</sup>

1. 2009년 12월 30일 법률 제9880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거하여 제273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개정하였다.

2.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2014년 말에 폐지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대하여 기존에는 100%와 50%를 감면받았으나, 2014.12.31이 일괄 폐지 되었다. 즉,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복지사업 및 자산운용사업에 대한 감면의 2014.12.31.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현재 연금공단은 2014년 3월에 시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지방이전에 따라 감면을 받은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주택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해 주었다. 이것은 5년간만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기로 하였다.<sup>3</sup>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연금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관리단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괄적인 종료로 인하여 더 이상의 세제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세 지원의 폐지는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 현행과 같은 지방세 부과는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연금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장기적 안정성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연금소득 과세원칙을 준수하여 각출단계와 적립금의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부담금 적립시에 소득공제(Exempt)하고,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Exempt)하며, 연금으로 수급 시에는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금 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특례가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운용단계에서 과거와 같이 복지사업과 기금운용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100%와 50%로 감면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연금제도 자체가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공적연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적립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면 지방세 부과의 타당성은 낮다. 예측단위적립방식(PUC)과 가입연령방식(EAN) 모두 연금부채가 현재 기금규모보다 커서 연금재정에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지방세특례제한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에 비하여 연금공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는 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현재 비영리법인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원칙에도 비추어 운용단계의 지방세 부과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연금공단 지방세 지원을 확대와 같은 개선 방안 및 지방세 감면 지원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법 개정된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에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사학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지방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제2장 현행 연금공단 지방세 현황

### 1. 선행연구의 고찰

연금공단에 관한 지방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안병무(2014)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한국감정원의 지방이전 사례를 들어 경제적인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재순 외(2014)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과 지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토교통부에 종전 부동산 매각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현황을 보면, 정부 소속기관의 경우 현재 90%가 넘는 매각 실적을 보이는 반면,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부동산은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매각지원 전담반 구성, 민간 전문 매각대행기관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각 특이사항을 가진 종전 부동산의 경우 매각시기 조정, 공익목적 종전 부동산의 처분방안 재검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매입 유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종전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반 매수자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취득세 감면 및 소유권 이전조건 완화, 소유권 등기이전 전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 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김병일(2014)의 연구에서는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가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국가 공기업에 대한 감면기준이 미흡하다는 점과 지방 공기업에 대한 국세의 감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액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국가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과 일반적 용도별 감면과의 차이점이 모호하고 감면기간의 지속적인 연장 문제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공공성 및 기업성의 정도에 따라 국가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기준 또는 과세전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성호(2014)의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한편, 김태환(2004)은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프랑스 공공기관 이전사례의 가장 주요한 시사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김도승 외(2013)의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문제로는 국가 정책적 감면 위주의 구조로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감면의 기득권화 및 만성화를 지적하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용 내실화를 주장하였고, 지방세 감면 근거법제의 일원화와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시 PAYGO 준칙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방정부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금공단의 지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관리단에 대하여 지원이 있었는데, 일몰기한(2014.12.31)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연금공단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지방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공단 지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하여 일본 및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세 지원에 대한 특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을 조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현행 연금공단 지방세 운영 단계별 현황

### 가. 부동산 관련 단계별 과세 현황

현행 연금공단의 지방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를 매입, 보유, 매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공단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별도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취득세율 현황은 <표 1>과 같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가 100% 감면(1.5억 이하), 50% 감면(1.5억~3억, 수도권 4억)된다.

<표 1>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현황

(기준일 : 2020.7.10)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유상	주택	개인	1주택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농지		3%		
	주택과 농지 외		4%		
무상	상속		2.8%(농지 2.3%)		
	증여		3.5%(비영리 2.8%)		
			12%(조정대상지역 외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원시취득		2.8%		
	공유물 분할		2.3%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연금공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토지와 건축물이며, 일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이 포함되고 있다. 연금공단에서 구입하는 토지와 건물은 연금업무를 지원하는 용도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사업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sup>4</sup> 2020년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 세율은 <표 2>와 같다.

4. 기금을 통한 주택 및 건물의 구입은 별도로 후술하고자 한다.

〈표 2〉 현행 재산세 세율 현황

(기준일 : 2020.1.1)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구분		세율	구분	세율	구분	세율	구분	세율
분리과세대상	농지,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별장	4%	고급선박	5%
	공장용지 등	0.2%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시지역 등의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0.5%	별장 이외의 주택	0.01% ~ 0.04%	일반선박	0.3%
종합합산 과세대상	0.02% ~ 0.05%	기타 건축물						
별도합산 과세대상	0.02% ~ 0.04%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한 후에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모든 연금공단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납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sup>5</sup>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밖에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2020년 7월 10일 기준 현재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종합부동산 세율은 〈표 3〉과 같다.

5.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6억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하며,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집종지 등)에 대하여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80억원을 공제한다.

2020 외부공모과제연구 | 2020 기획재정부 연구 | 2020 지방과제연구 | 2020 내부연구

〈표 3〉 현행 종합부동산 세율 현황

(기준일 : 2020.7.10)

주택(2주택 이하 소유)		주택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12.16대책)	과세표준	세율 (7.10대책)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0%	3억원 이하	1.20%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80%	6억원 이하	1.60%				
12억원 이하	1.20%	12억원 이하	2.20%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1.60%	50억원 이하	3.60%				
94억원 이하	2.20%	94억원 이하	5.00%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94억원 초과	3.00%	94억원 초과	6.00%				

매각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45%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는 2001년도부터 지방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과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한 다음 지방자치 단체에 세수입을 일부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재원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의 독립과 함께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중앙정부에서 걸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과 징수 방식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나.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지원 현황

과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4조에는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었다. 제①항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였다. 반면, 「국민연금법」 제25조 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공무원연금법」 제17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 반면, 「공무원연금법」 제17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 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4년 12월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기존에 있었던 일몰 규정이 전부 폐지가 되었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과 일몰기한에 대한 내용은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6</sup>

연금공단 이외에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평가를 비롯한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 공제회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을 폐지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유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양급여 업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에는 기존에는 감면율이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가 각각 감면되었으나 2014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양급여 평가업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25%를 감면하였으나 2014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공제회가 있다.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 공제회가 있는데 이러한 공제회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받았는데 이것 역시 2014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하여도 취득세 50%와 재산세 100%가 감면받았는데 이 또한 폐지되었다.

6. 각종 공단·공제회 감면정비(§24, §25, §28, §39, §72)

〈표 4〉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과 일몰기한

개 정 전	개 정 후
①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24①1) ②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24②1) ③ 사학연금공단 복지사업(\$24②1) ④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약급여(\$39②1) 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복지사업(\$72③1) ○(감 면 율)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일몰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종료로 부과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폐지 ○과세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업(\$24①2) ⑦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증식사업(\$24②2) ⑧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사업(\$24②2) 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관리(\$39①2) 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자산운용사업(\$72③2) ○(감 면 율)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일몰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종료로 부과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폐지 ○과세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 3.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납부 현황

#### 가. 사학연금 지방세 납부 현황

연금업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며 공단 건물 보유 시에는 각 건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sup>7</sup> 현재 사학연금에는 1개의 본부와 3개의 센터가 있다. 과거 대전에 오류회관이 있었으나 이는 2019년에 매각되었다. 건축물을 보유 시에는 재산세를 비롯한 지역자원개발세와 지방교육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부스에 대하여도 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

〈표 5〉 회관별 재산세 납부 현황

Panel A : 건물분 재산세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서울회관	대전둔산회관	대전오류회관	부산회관	나주회관	계
2013	41,819	55,033	12,589	36,527	-	145,968
2014	43,931	57,691	27,628	37,250	-	166,500
2015	62,808	83,012	39,482	54,744	7,221	247,267
2016	60,985	82,070	38,786	53,830	9,065	244,736
2017	59,119	81,033	38,155	53,048	8,943	240,298
2018	58,703	81,529	38,302	54,665	9,283	242,482
2019	60,405	82,568	-	54,955	9,415	207,343
합계	387,770	522,936	194,942	345,019	43,927	1,494,594

Panel B : 토지분 재산세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서울회관	대전둔산회관	대전오류회관	부산회관	나주회관	계
2013	276,386	26,223	6,817	21,364	-	330,790
2014	277,593	31,787	6,877	22,304	-	338,561
2015	457,691	65,739	15,345	38,277	4,241	581,293
2016	480,693	67,652	15,886	40,051	22,576	626,858
2017	509,445	92,262	22,069	45,464	24,166	693,406
2018	593,019	97,746	22,231	52,930	26,290	792,216
2019	880,545	96,700	-	54,423	44,932	1,076,600
합계	3,475,372	478,109	89,225	274,813	122,205	4,439,724

과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회관별 재산세 등 납부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의 본사 건물인 나주회관은 2019년도에 재산세(도시지역세)를 9,407,640원을 납부하였으며<sup>8</sup>, 지역자원시설세는 18,997,200원, 지방교육세는 397,500원을 납부하였다.<sup>9</sup> 서울회관은 2019년도에 재산세를 60,405,460원을 납부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로 55,628,110원, 지방교육세로 7,744,290원을 납부하여 총 123,777,860원을 납부하였다. 부산회관은 재산세로 54,955,11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50,642,680원, 지방교육세로 7,045,520원으로 총

8. 최소납부세제 제도는 재산세 전체 면세액의 15% 납부하는 것이다.

9. 재산세의 20% 세율

112,643,310원을 납부하였다. 대전 둔산회관은 재산세로 82,568,1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6,067,940원을, 지방교육세로 10,585,650원을 납부하였다.<sup>10</sup> 전체 회관의 납부 총액은 169,221,690원이다.

현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는 7월과 9월에 분납하고 있는데,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다.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로 하고 있다. 단, 납부할 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

〈표 6〉 나주본부 재산세 납부 현황

Panel A : 건물분 재산세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세(건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감면액
2015 <sup>11</sup>	7,221	18,468	-	25,690	15,308
2016 <sup>12</sup>	9,065	18,289	382	7,737	13,012
2017	8,943	18,043	377	27,364	12,837
2018	9,283	18,732	391	28,408	13,326
2019	9,415	18,999	397	28,812	13,524
합 계	43,927	92,531	1,547	118,011	68,007

Panel B : 토지분 재산세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세(토지)	지방교육세	합계	감면액
2015 <sup>13</sup>	4,241	-	4,241	30,000
2016 <sup>14</sup>	9,739	675	10,414	675
2017 <sup>15</sup>	24,166	2,811	26,977	16,866
2018 <sup>16</sup>	26,290	2,994	29,284	17,965
2019 <sup>17</sup>	44,932	6,594	51,527	-
합 계	109,368	13,074	122,443	65,506

10. 재산세액 52,928,295원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1. 재산세 100%감면, 재산세(도시지역) 감면 ×

12. 재산세 85%감면, 15% 납부 재산세(도시지역) 감면 ×

13. 재산세 100%감면, 재산세(도시지역) 감면 ×

이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소유기관과 무관하다는 데 주의를 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다. 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종전의 토지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과세표준에 세율(0.14%)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과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나누본부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과거 7개년 동안 새로운 건물 신축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 취득세를 납부 금액은 매우 낮다. 다만, 대전 둔산회관에서 2018년에 4,558,200원을 납부하였으며, 부산회관에서 2019년에 7,399,930원을 납부하였다.

참고로, 현재 적용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택에 대한 세율은 6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0.1%를 부과하고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로 부과한다.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9만 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이며, 3억원 초과시에는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0.4%로 부과된다.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은 4%로 부과되며,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공장용건축물은 0.5%로 부과되며,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0.25%로 부과한다. 한편, 도시지역분의 재산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0.14%로 부과한다.

반면, 건축물분 지역자원개발세의 적용 세율은 주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중과(대형화재 위험건축물은 3배 중과)한다.<sup>18</sup> 600만원 이하는 0.04%로 부과한다.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400원+600만원 초과 금액의 0.05%이며,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5,900원+1300만원 초과 금액의 0.06%이며,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3,700원+2,600만원 초과 금액의 0.08%이며, 3,900만원

14. 재산세 85%감면, 15% 납부(도시지역) 감면 ×

15. 재산세 50%감면, 재산세 50% 납부(도시지역) 감면 ×

16. 재산세 50%감면, 50% 납부(도시지역) 감면 ×

17. 2016년분에 대하여는 재산세(토지분)에 대하여 12,887,060원과 지방교육세 2,135,770원을 징수하였다.

18.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초과 6,4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4,100원+3,900만원 초과 금액의 0.1%이며, 6,400만원 초과시에는 49,100원+6,400만원 초과 금액의 0.12%로 부과한다. 지방교육세는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에 의하여 과세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로 부과한다.<sup>19</sup>

## 나. 사학연금 지방세 감면 현황

서울회관의 재산세 감면액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2항에 의거 2014년 일몰이 폐지되는 해에는 220,222,080원의 감면을 받았다.

<표 7> 서울회관의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재산세(건물분)		재산세(토지분)		소계
	재산세(건물분)	지방교육세	재산세(토지분)	지방교육세	
2013	19,726	3,945	162,086	32,417	218,175
2014	20,722	4,144	162,796	32,559	220,222

이외 대전둔산회관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3,437,045원과 57,747,066원을 납부하였으며, 대전 오류회관은 19,407,016원과 19,910,221원을 납부하였다. 부산회관은 12,182,417원과 13,585,920원을 납부하였다. 나주회관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77,308,712원과, 49,470,959원, 47,423,849원, 50,500,313원, 13,524,442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표 8>의 Panel A는 회관별,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과 감면금액, Panel B는 나주회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과 감면액 상세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주회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2015년도에는 재산세 100%를 감면받았지만, 2016년도에는 재산세 85%를 감면받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50%를 감면받았다. 2019년도에는 감면액은 없다.

토지분 재산세 납부 현황으로 나주회관은 토지분에 대한 지방세는 51,527,160원으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32,972,363원,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는 11,960,327원, 지방교육세로 6,594,470원을 납부하였다. 서울회관은 재산세 별도합산은 651,944,800원, 재산세 도시지역은

19. 2011년 법령 개정으로 종전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28,600,680원을, 지방교육세는 130,388,960원을 납부하여 총 1,010,934,440원을 납부하였다. 부산회관은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40,002,672원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14,420,935원을, 지방교육세로 8,000,530원을 납부하여 총 62,424,137원을 납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둔산회관은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71,319,212원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25,381,724원을 지방교육세로 14,263,840원을 납부하여 110,964,776원을 납부하였다.

〈표 8〉 회관별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과 감면 금액

Panel A : 회관별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서울회관	대전둔산회관	대전오류회관	부산회관	니주회관	합계
2013	162,081	26,223	6,817	12,072	-	207,193
2014	165,063	32,230	6,973	12,802	-	217,068
2015	416,622	80,859	18,875	34,492	-	550,848
2016	443,546	84,346	19,806	36,600	19,591	603,889
2017	475,342	85,765	20,216	42,063	17,719	641,105
2018	563,230	92,503	20,730	49,907	19,209	745,579
2019	919,402	100,577	-	56,413	46,499	1,122,891
합 계	3,145,286	502,503	93,417	244,349	103,018	4,088,573

Panel B : 니주회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과 감면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종합부동산세	합계	감면액	비고
2015	-		32,000	재산세 100%감면
2016	4,209	4,209	4,209	재산세 85%감면, 15%납부
2017	17,719	17,719	17,719	재산세 50%감면
2018	19,209	19,209	19,209	재산세 50%감면
2019	46,499	46,499	-	-
2016추정	15,382	15,382	15,382	재산세 35% 추가감면분 추정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적용 세율은 〈표 9〉와 같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액의 0.14%를 부과하고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8조에 근거하여 토지분 지역자원개발세를 과세한다. 적용세율은 주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대형화재 위험건축물은 3배 중과) 지방교육세는 과세근거로는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에 의하여 과세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로 부과한다.

〈표 9〉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적용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0.3%)
		1억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0.5%)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0.4%)
	분리과세대상 (정률세율)	농주, 목장용지,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4%)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2%)
건물	주택	6천만원 이하	0.1%
		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초과시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	0.5%
		그 밖의 건축물	0.25%
	선박과 항공기	고급선박	5%
		그 밖의 선박	0.3%
		항공기	0.3%

## 제3장 현행 연금공단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 1. 일몰연장이 아닌 일몰규정 일괄 폐지

#### 가. 지방세 일몰규정 연혁

현재 연금공단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열거하고 있다. 현행 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되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201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종료가 되었다. 「국민연금법」 제25조에서는 공단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이 있다. 「국민연금법」 제25조 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제6조의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 서비스 사업,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사업을 한다. 급여의 지급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부담금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를 하고 기술하고 있다.

#### 나. 2014년 말 일괄적인 감면 규정 폐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관리단 등 연금업무를 관장하는 공단 등에 대한 감면은 2014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괄적인 종료로 인하여 더 이상 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제지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일몰기한인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공단·공제회 감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먼저, 연금공단의 복지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취득세의 감면을 폐지하였다.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sup>20</sup>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sup>21</sup> 사학연금공단 복지사업,<sup>22</sup>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약급여,<sup>23</sup>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복지사업<sup>24</sup>은 기존 감면율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였으나, 일몰기한의 폐지로 인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었다.

연금공단의 기금증식 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일몰기한의 폐지로 인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업,<sup>25</sup>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①항 제1호

2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②항 제1호

22.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②항 제1호

23.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②항 제1호

24.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③항 제1호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증식사업,<sup>26</sup>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사업,<sup>27</sup>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관리 사업,<sup>28</sup>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산운용사업<sup>29</sup> 등에 대하여 폐지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유업무(제39조 제①항 제1호)와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양급여(제39조 제②항 제1호)에 대하여는 기존 감면율이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를 감면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과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양급여평가(제39조 제②항 제2호)에 대하여는 기존 취득세 50%와 재산세 25%를 감면하던 것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과세로 전환되었다. 이밖에, 각종 공제회 사업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을 폐지하였다.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 공제회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제25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하던 것을 폐지하게 되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제28조 제①항)에 대하여도 기존 감면율인 취득세 50%와 재산세 100%의 감면을 폐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 2.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위배

### 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현행 지방세 과세의 문제

연금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장기적 안정성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바람직한 연금제도의 형태를 고려할 경우 다각적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연금의 특성이 장기간을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여 세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금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세 가지의 범주는 각출단계와 적립금의 운용단계, 그리고 급부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과세원칙을 수립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 또한, 연금제도는 노후세대의 소득보장책과 보완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제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①항 제2호

2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②항 제2호

2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②항 제2호

28.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①항 제2호

29.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③항 제2호

현재 연금소득 과세원칙은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으로 미드방식, 블루프린트방식, 카터방식의 과세원칙을 갖고 있다. 연금소득 과세방식은 1966년의 『카터보고서(Carter Committee)』와 1970년의 미국 재무성 보고서인 『블루프린트 보고서(Blueprint Committee)』 또는 영국의 『미드 보고서(Meade Committee)』가 있다(社會保障研究所). 이 세가지 연금소득 과세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각출, 운용, 급부 단계의 세제를 과세 및 비과세를 고려하여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연금소득 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드 방식이 있다. 영국의 세계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미드 보고서(Meade Committee)』는 포괄적 소득과세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한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단계별 과세취급을 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블루프린트 방식이 있다. 미국 재무성은 『근본적 세계개혁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적인 타협안으로 연금세제 취급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카터 방식이 있다. 캐나다의 『카터 보고서(Carter Committee)』는 퇴직후의 소득유지계획을 촉진한다는 사회정책적 관장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등록퇴직소득플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plan)에 관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는 카터방식과 블루프린트방식을 혼합하여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담세능력의 대표적 지표로서 소득과세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기평균 수준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장기평균 소득과세 대신에 개인의 전생애 소득을 평준화하여 과세하는 것을 세제상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연금소득과세는 카터방식에 의해 과세하고 있다. 이후에 논의되는 대부분은 이 방식 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포괄적소득과세의 방식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포괄적소득세의 연금과세방식

사항	정통과방식	청사진방식	카터방식
사업주각출	경비로서공제 급여로보고 과세	경비로서 공제 급여로보지않음	경비로서공제 급여로 보지않음
피용자각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립금운용수익	개인베이스과세	과세	비과세
연금급부	비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 나. 현행 연금소득 과세체계에 위배되는 문제

우리나라 현행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기본적으로 부담금 적립시에 소득공제(exempt)하고,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exempt)하며, 연금으로 지급시에는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급여의 형태에 따라 세제취급이 다르게 되는데, 현행 공적연금은 EET의 과세체계를 준용하고 있지만,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으로 구분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일정부분만 소득공제하고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며 지급단계에서는 불입된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는 각각 부담금 불입 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그리고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up>30</sup>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반액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하여도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급부시에 과세된다.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는 2001년까지 TEE(각출단계에서 과세, 운용단계 비과세, 급부단계 비과세)형태였다. 그러나 2001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체계가 EET형태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 단계에서 과세하게 되었다. 여전히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일괄적인 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폐지로 인하여 EET의 과세체계가 ETT의 과세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연금공단의 법인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전액 감면받고 있으나 지방세는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단계는 공적연금의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급여시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 3.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보유한 기관의 특성 미고려

#### 가. 연금충당부채 보유 특성 미고려

과거 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을 폐지하였던 주된 근거를 살펴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폐지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세조치는 연금공단이 공적연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적립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특성을 지닌 정부기관의 하나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주효찬 · 김병률 · 이영민, 2017).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미적립충당부채를 정부회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지만,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필수보충정보로 주석에만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무제표 본문에는 미적립 충당부채에 대한 사항이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 것은 이와 같은 연금공단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감안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연금부채의 산정에는 평가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보험수리적 현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연금재정에 관한 방식은 크게 완전적립방식과 부분적립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국가회계의 일종인 연금회계처리지침에서는 연금충당부채의 산정을 위해서 예측단위적립방식(PUC : projected unit credit, 이하 'PUC; 방식이라 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연금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산정시에는 PUC를 적용하고 있다. PUC에서는 총급여의 보험수리적 현가 중 평가시점 현재까지의 재직에 의해 발생한 부분을 연금부채로 산정하며, EAN에서는 총급여의 보험수리적 현가에서 미래 부담금 수입의 보험수리적 현가를 차감함으로써 연금부채를 산정한다.

이 방법 이외에 가입연령방식이 있다. 가입연령방식(EAN : entry age normal cost method, 이하 'EAN'이라 함)이 있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사학연금법 제42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사유 및 급여액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연금회계처리 지침에서 채택하고 있는 PUC 방식 이외에 추가로 EAN 방식에 의하여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PUC 방식은 가입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연금충당부채 평가시점인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반면, EAN 방식은 모든 사학연금 가입자가 하나의 가상 가입연령에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 재직한다는 가정에 따라 연금부채를 산출한다.

주효찬 외(2017)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사학연금제도의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1</sup> 또한,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학연금제도의 급여체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IBO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는 약 114.4조원으로 나타난다. 동 시점의 적립 기금액은 약 16.4조원으로 미적립 부채(unfunded actuarial liability)는 연금부채에서 적립 기금액을 차감한 약 98.0조원이다. 또한 연금부채 대비 적립 기금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적립률(funded ratio)은 약 14.30%이다. 반면, EAN의 연금부채는 약 115.1조원으로 IBO에 비해 약 6,910억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sup>32</sup>

### 나. 현재 이익이 발생하는데 과세하는 문제

연금공단의 법인세와 지방세 납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현재 재무제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사학연금의 회계를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현행 연금공단에 대한 조세감면의 폐지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상의 경계선에서 발생한 과세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김수성 외(2014)의 연구에서 공적연금 운용단계 이익의 과세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주된 이슈는 과세도관이론(Conduit Theory)에 의하여 법인세는 법인단계에서 과세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은 궁극적으로

31. PUC에 의한 연금부채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구분	IBO	PBO	ABO	VBO
재직자	784,132	594,608	432,567	475,306
수급자	350,408	289,661	289,661	289,661
수급대기자	9,311	6,864	5,344	5,344
합계	1,143,850	891,133	727,572	770,311

반면, EAN에 의한 연금부채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억원)

표준부담률	연금부채				미적립부채	특별부담률	
	재직자	수급자	수급대기자	합계		폐쇄집단	개방집단
27.14	791,042	350,408	9,311	1,150,760	987,150	45.16	2.65

32. 구체적인 내용은 주효찬 외(2017) 연구 내용을 참고할 것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소득세로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원으로든 현재의 기금이 미래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유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거 사학연금기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었지만, 위와 같은 과세 논리로 인하여 운용단계의 이익에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나마 사학연금기금에만 존재하고 있는 퇴직수당의 기부금에 대한 한도초과의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 2020년 법인세 신고분부터 납부할 법인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최원석·최기호·김수성, 2020). 이와 같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전액 감면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 가. 타 법인 지방세 지원과의 형평성 위배

현재 모든 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은 감면이 전액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수한 목적의 공단에 대하여 지방세를 한정적으로 감면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연금공단의 특성은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통해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일부 공단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연금공단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폐지되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을 언급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정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또한, 특정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지원하고 있다.<sup>33</sup>

### 나. 유사기관(공단)에 비해 불리한 지방세 지원의 문제점

현행 연금공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세는 다른 공단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있다.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 연도별로 차등하여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지원하고 있다. 각 연도별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에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33.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다. 이때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다. 이때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 제4장 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 1. 지방세 지원의 확대 필요

#### 가.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

사학연금공단은 다른 공단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일반 공단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열거된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령,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등과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등에 대하여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이익에 대하여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법인세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화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다. 이처럼 법인세가 실제로 납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지방세에 대하여도 이를 유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금의 성격상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을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적연금기금의 도관(Conduit)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금에 대한 운용 시 지방세의 과세유예는 도관체로서 연금공단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법인세 지원과 유사한 지방세 지원

김수성(2016)은 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로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에서와 같이 지방세 감면율이 타당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사학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지방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대 공적연금은 각 기금을 운용하여 퇴직 후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 연금기금 사이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각기 서로 다르다. 공적연금기금 중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국가가 그 운영주체이므로 해당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민간부문(관리공단)이 운용주체라는 이유로 그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위와 같이 기금 간 과세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두 개의 공적연금기금 중에서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과세 자체가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에 관한 재검토에 목적이 있으며,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첫째, 연금사업의 공익성과 경쟁중립성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비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사업이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비과세의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외관상 기금운용상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금운용 이익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미적립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방세의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과세도관의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현행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의 도관체로 볼 수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은 전액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어 기금운용단계의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이는 연금소득 과세원칙을 살펴 볼 때 각출 시 비과세, 운용 시 비과세, 급부 시 과세 이상의 기준을 살펴 볼 때 운용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기금회계만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한다면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 2.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감면 지원 타당성과 해외사례 검토

### 가.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감면 지원 타당성 검토

원윤희(1998)의 연구에서는 국가 및 공공법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지방재정의 보정방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연금공단을 살펴볼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공단은 모두 이사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과세법인으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은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학연금기금 역시 교육부의 관리 감독하에 국가의 위탁을 받아 이를 사학연금공단의 이사장이 관리하고 운용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연금공단은 국가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연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에 지방세의 감면과 비과세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조세의 감면이나 비과세는 통상적으로 특정부문이나 특정의 기능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면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가와 공공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하고 있는데, 연금공단을 국가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가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국가 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를 의미하고 있다.

국가 및 공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이론적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세와 지방세가 비과세되거나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면세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상호간에 조세상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찾고 있다. 또한, 국가 등의 과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세로서 그 세수는 결국 국가 등에 재정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재정의 부족은 결국 국가세수로 충당되는 것으로서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밖에, 공공법인에 대한 조세감면도 같은 맥락이다.

## 나. 일본의 지방세 납부 사례를 통한 시사점 모색

현재 사학연금공단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은 일본의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각 특수직역별로 공제사업단이 구분되어 국가공무원공제조합과 지방공무원공제조합 및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 별도로 있었다.<sup>34</sup> 연금기능의 강화 및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일원화법이 2012년에 통과되어 2015년에는 후생연금과 각종 공제연금이 일원화되었다.

일본에서는 국세의 경우 조세특별조치법이 있지만, 지방세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별조치법은 없다. 일본 법인세법 제5조를 보면, 비과세법인에 관해 별표 2를 두고 있는데, 이 대상법인 중에 일본연금기구가 일본연금기구법에 기초하여 비과세법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본 지방세법 제73조 이하에서는 부동산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3조의4 제1항을 보면, 공공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에 제공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공익법인 등이 그 본래의 용도 기타 일정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는 인적·물적 과세제외의 예라고 볼 수 있다(金子宏, 2019).

동항 제8호를 보면, “건강보험조합, 건강보험조합연합회, 국민건강보험조합,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및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가 경영하는 병원 및 진료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동산으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로부터 건강보험 등과 관련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세가 면제되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운용이 지방세법상의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일본 국민연금법 제80조(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과의 관계)에서는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외에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부터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제6조(비과세)를 보면,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운용법인이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계에 관한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또는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4. 일본의 공적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공제제도 외에 국민연금, 후생연금, 국가공무원공제조합 및 지방공무원공제조합 등 5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4개의 연금제도를 피용자 연금제도라 하고 1986년도의 제도개정에 따라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을 전국민 공통의 연금(기초연금)으로 하고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은 보수비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제연금에 있어서는 직역가산 제도가 있다.

### 3. 사학연금공단의 일몰규정 연장 법안 마련

#### 가. 전액 감면하는 방안

과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4조에는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였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위하여 연금공단에서 연금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그러나 연금소득과세의 원칙과 연금충당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위한 모든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법안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법안

현행 법령	개 선 안
①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24①1) ②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24②1) ③ 사학연금공단 복지사업(\$24②1) ④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약급여(\$39②1)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일몰기한) 2014.12.31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감면실시: 2021년 1월 1일부터
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업(\$24①2) ⑥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증식사업(\$24②2) ⑦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사업(\$24②2) ⑧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자산운용사업(\$72③2)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50% ○(일몰기한) 2014.12.31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감면실시: 2021년 1월 1일부터

### 나. 기존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방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표 12〉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방안

현행 법령	개선안
①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24①1) ②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24②1) ③ 사학연금공단 복지사업(\$24②1) ④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약급여(\$39②1)	○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 감면실시 : 2021년 1월 1일부터
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업(\$24①2) ⑥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증식사업(\$24②2) ⑦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사업(\$24②2) ⑧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자산운용사업(\$72③2)	○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실시 : 2021년 1월 1일부터

### 다. 타 기관과 유사한 조세감면 방안

연금공단을 제외한 일부 공단에 대하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지방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일부 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일부 공단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 및 감면을 하기 보다는 일부 50%와 25%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50%와 25%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7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를 75% 경감하고, 재산세는 50%를 경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75% 경감한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기존에 감면해주던 비율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표 13〉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법안

현행 법령	개 선 안
①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24①1) ②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24②1) ③ 사학연금공단 복지사업(\$24②1) ④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요약급여(\$39②1)	○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실시 : 2021년 1월 1일부터
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업(\$24①2) ⑥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중식사업(\$24②2) ⑦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사업(\$24②2) ⑧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자산운용사업(\$72③2)	○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 감면실시 : 2021년 1월 1일부터

#### 4. 유사기관의 지방세 특례 부여 법령 참조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현재 연금공단과 유사한 타 공단의 지방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조항이 있는 기관이 있다. 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및 환경공단 등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사업에 대해 취득세 75%와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에 규정된 사업 중에서 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② 재활

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③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50% 경감한다. 근로복지공단 사업 중 취득세와 재산세 25%의 경감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에 규정된 사업 (①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②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③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④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각각 25% 경감한다. 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과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75%와 50%를 감면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감면율의 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근로복지공단의 감면율

Panel A : 보험가입자와 수급자 관리 등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직접 사용분

구분	2012년 12월 31일 까지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 이후	감면 일몰기한
취득세(§27①)	100%	75%	25%	2020.12.31
재산세(§27①)	50%	25%	25%	2020.12.31

Panel B :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구분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감면 일몰기한
취득세(§27②)	100%	75%	2022.12.31,
재산세(§27②)	50%	50%	2020.12.31,
주민세(재산분)	100%	-	2016.12.31,
주민세(종업원분)	100%	-	2016.12.31,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을 언급하고 있고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sup>35</sup>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촉진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현황은 <표 15>와 같다.

<표 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현황

구분	2011.1.1.부터	2017.1.1.부터	감면 일몰기한
취득세(18조)	100%	25%	2022년
재산세(18조)	50%	25%	2022년

이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일정한 사업<sup>36</sup>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한다.<sup>37</sup> 한국환경공단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현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한국환경공단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현황

구분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2,5호)	100%	75%	25%
취득세(11,15,16호)	50%	25%	25%
재산세	50%	25%	25%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60%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60%~75%를 감면하였다. 그 이후 2022년 12월

36. 취득세 감면 대상사업은「한국환경공단법」제17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11호, 제15호, 제16호의 사업을 의미한다.

37. 법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 취득세의 100분의 25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 취득세의 100분의 25

31일까지는 취득세는 35%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0%를 감면한다. 감면 일몰 기한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sup>38</sup>

〈표 17〉 지방공단의 감면율 현황

구분	2014.1.1.부터	2020.1.1.부터	감면 일몰기한
취득세(§85조의2②)	100%	100%	2022년
등록면허세(§85조의2②)	100%	-	2019년
재산세(§85조의2②)	100%	100%	2022년
도시지역분(§85조의2②)	100%	-	2019년

그리고, 지방공단에 대하여도 감면을 하고 있다.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였으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 종료하였다. 또한, 법률 제15295호(2017.12.26.)부칙 제7조제2호에 따라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 지방공단의 감면율은 〈표 17〉과 같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당수의 공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기관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소득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연금공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 기관에서 부여한 지방세 특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운용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금의 재정상태가 현재 안정화되지 못하고 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특성을 살펴 전액 지방세 지원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8. 법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5.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지원으로 인한 세수절감 효과

2015년 1월부터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과는 다른 내용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많은 부분이 과세로 전환하게 되었다.<sup>39</sup> 과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4조에는 사학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에 폐지되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다시금 부활된다면 사학연금공단의 입장에서는 세수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서울센터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물이 완공될 경우 취득세와 매년 재산세 및 부가세 등의 납부가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세수절감 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으로 인한 세수절감 효과는 대략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표 18>과 같다.

<표 18>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지원으로 인한 세수절감 효과

(단위: 천원)

구분	건축물	토지분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합계
나주본부	18,815	65,944	37,994	13,983	136,736
서울센터	16,000,000	1,303,889	111,256	276,266	17,691,411
부산센터	109,910	80,005	101,285	30,092	321,292
대전센터	165,136	142,638	402,671	80,073	790,518
합계 <sup>41</sup>	16,293,861	1,592,476	653,206	400,414	18,939,957

주) 저자가 산출한 금액임.

39. 2015년 1월 1일 발표한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5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용을 참조함

40. 서울센터는 2024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공사비는 4천 850억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서울센터 재건축으로 인한 지방세를 간략히 산출해보면 4천억원 \* 4%+ 각종 부가세 = 약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41. 이밖에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

## 제5장 결론

2015년 1월부터 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폐지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분야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 감면정비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사회복지, 의료기관, 각종 공단·공제회, 교육·과학기술, 관광, 중소기업, 수송·교통, 주택공급 등 지역개발 분야,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분야, 공공행정 분야, 지방소득세 분야, 기업지원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각종 공단·공제회 감면 분야에도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연금공단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금 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도 더이상 지방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한 사학연금공단의 복지사업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관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고 그나마 유지되어온 지방세의 일부 지원은 폐지된 것이다.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기존에 부여했었던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사학연금공단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 사례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매년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연금을 운용하고 연금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재정 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현행과 같은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각종 연금공단에 대하여 후생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위하여 운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연금재정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충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연금소득과제원칙을 각출 및 운용 시 비과세하고, 연금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단계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운용단계 과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연금세제를 검토함에 있어 각출단계와 적립금의 운용단계,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는 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부합한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적 기준으로서 우리나라는 1966년의 『카터보고서(Carter Committe)』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운용단계에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모두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단계에서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비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운용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향후 지급해야만 하는 연금재정금액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기금의 규모가 작아서 연금충당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면을 간과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연금공단의 기능처럼 국가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단에 대하여 여전히 지방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연금공단에도 지방세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연금공단이 타 기관에 비하여 지방세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금공단의 지방세 감면 지원 타당성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연금공단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해외 유사기관 연금공단의 지방세 납부 사례는 전혀 없었다. 이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연금공단의 일몰규정 연장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법안과 모든 연금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안 및 현재 연금공단 이외에 기관에서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기관의 지원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재정 안정화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지원으로 인한 세수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각 연금공단의 자료를 입수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수 절감효과를 파악하고, 이러한 조세특례를 통해 사학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학연금공단의 성격이나 제도적인 취지에 부합한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의 마련 등 추가적인 후속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도승 · 임규진(2013),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 개선 방안」, 「지방지차법연구」, 제13권 제3호, pp.257-282.
- 김병일(2014),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4권 제3호, pp.181-239.
- 김수성(2008), 「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pp.93-139.
- \_\_\_\_\_ · 문성훈(2014), 「공적연금 운용단계 이익의 과세 재고찰 : 과세도관이론(Conduit Theory)과 연금충당부채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pp.105-143.
- 김태환(2004),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국토」, pp.81-89.
- 안병무(2014),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447-460.
- 원윤희(1998), 「국가 및 공공법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지방재정 보전방안」, 「지방재정학보」, pp.153-169.
- 이재순 · 김태경 · 김태현 · 김선웅 · 이상경 · 김갑성 · 이소윤 · 윤기학 · 박희영(20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과 지자체 활용 방안」, 「도시정보」, 제391권 pp.3-26.
- 정성호(2014),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3호 pp.437-461.
- 주효찬 · 김병률 · 이영민(2017), 「사학연금의 연금부채평가 :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 방식의 비교」, 「사학연금연구」, 제2권, pp.209-241.
- 최원석 · 최기호 · 김수성(2020), 「사학연금기금 재정 안정을 위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pp.1-41.
- 金子宏(2019), 「租税法〈第23版〉」, 弘文堂, p.857.
- 日本租税研究所(1997), 「日税研論集」, vol 37.

## 참고문헌

- 社會保障研究所, 「リーテイソクス日本社會保障 3 年金」, 有斐閣, pp.280~284.
-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 일본 전자법령정보시스템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http://www@geps.or.k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ttp://www@tp.or.kr/>
- 군인연금공단 <http://www@mps.go.kr/>